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22. 4. 25(월) 16:00~18:3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 석 자 (12명)	강은솔(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남경희(관리처장), 류태경(경영대학 공동대표), 박귀천(학생처장), 박인휘(총무처장), 배소현(예산팀장), 백승현(의과대학 공동대표), 신하윤(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소연(음악대학 공동대표), 정제영(기획처장), 한지수(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인문과학대학 공동대표)		
불 참 자 (1명)	황진선(대학원 학생회장)		
안 건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2.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3.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 심의 및 의결 4.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학생요구안 논의		
내 용	■ 개회 - 위원장(교무처장)이 학생위원 위촉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 위원장이 전년도에 합의된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이후 10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회하다. ■ 회의내용 **1.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이화해피펀드 인출과 관련하여 학생 지원 상세내용을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이화해피펀드의 사용 목적 및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학생 장학금 지원, 장애학생 학습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복지사업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이화해피펀드가 교외 기부금만으로 형성되는지 추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소액기부 키오스크 등의 예를 들며 교내외 구분 없이 기부 가능하다고 부연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최근 원금보존기금 인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원금보존기금 인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부 지침에 따른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구분 원칙과 원금보존기금 인출 규모의 추세에 대해 설명하다. 덧붙여, 모금활동 등을 통한 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립된 기금을 인출하여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외부전문가위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나 본교는 병원.산학 전입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학교의 필수 목적사업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향후에도 원금보존기금 인출이 지속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기금 인출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적정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연구학생경비 중 기타·학생경비와 관련하여 상세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기타·학생경비는 주로 실험·실습 지원, 학생활동 지원 등 단과대학에 배정되는 학생 관련 예산이며, 일부는 미래혁신센터, 호크마교양대학, 학생처 등 관련 부서에 배정되어 단과대학 구분 없이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연구학생경비의 결산금액이 예산금액 대비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며 감소 사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연구학생경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한 행사·프로그램 취소, 휴학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예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결산금액 대비하여서는 증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등심위의 논의내용을 언급하며 신입생 합격자를 위한 합격키트 배부가 중단된 이유를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입학처 등 관련부서에 확인하여 별도 답변하기로 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교비회계의 2021학년도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음악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의과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1학년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2.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 양병원 재무팀장이 배석하다.

- 위원장의 요청으로 재무팀장이 의료원 및 양병원의 2021학년도 결산(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 대비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자료에는 예산 대비 증감분석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병원 전입금 집행 계획 모니터링 및 교비회계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예산 대비 결산 분석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재무팀장이 외부전문가위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과거 NICU(신생아집중치료실) 사태 이후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의료원 전임교원 인건비 등 학교 전출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덧붙여, 최근 의료수익이 흑자전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설명하며 2023년부터 학교 전출금을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의료원의 인건비 상승과 관련하여 양병원의 임금인상률을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임금인상률은 약 3%였으나, 인건비 상승의 주요인은 운영 병상 수 확대 등에 따른 의료인력 증가에 있다고 설명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학교의 임금인상률을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학교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동결되었다고 답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병원이 학교 전출금을 미집행하는 상황에서 자체 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다. - 전략기획본부장과 재무팀장이 야간 당직근무 등 병원 근로환경이 특수성과 의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임금협상 과정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의료원 수익개선을 통해 학교 재정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전략기획본부장이 금년도 성과개선을 약속하다. - 병원 관계자 전원이 퇴장하고, 위원장이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음악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의과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회계의 2021학년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2021학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친 후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다.

	3.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예산팀장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주요 개정사항별로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검토의견 및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위원 중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외에 단과대학 대표자가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 위원은 기본적으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들로 위촉되며, 학생위원 중 단과대학 대표는 매년 위원 구성이 달라지는 반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규정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단과대학 대표 궐위 시의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 총학생회 부재 상황에서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및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등심위 위원에 위촉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회의 소집 요건과 위원 외 회의 참석자의 발언 허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문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는 상위법의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회의 일정은 상위법에 명시된 회의일정 통보 및 회의자료 송부 기한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고 답하다. 또한,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의 발언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덧붙이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금년도 등심위 위원이 내년도 등심위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등심위 위원 이력과는 무관하며 회의 안건과의 관련성이 기준이 된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의 사무업무는 기획처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회의 발언자 신청 시 교직원 위원은 예산팀에, 학생 위원은 절차에 따라 학생처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 의결을 제안하다. 안건 심의 전 이석한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1인을 제외하고, 참석 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개정(안)

4.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학생요구안 논의

- 위원장이 학생위원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학생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현장 배부한 자료를 통해 등심위 구조 관련 학생요구안 4개 항목(등록금심의위원회 속기 학생 범위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사전검토 기간 연장,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시 학생위원의 일정 고려, 본교생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참관)을 상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구조 관련 학생요구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 속기 학생 범위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학생위원의 요청 취지에 공감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자격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토 가능하므로 학생처를 통해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어서 기획처장이 등심위 자료 사전검토 기간 연장 및 등심위 회의 일정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3차 등심위의 경우 결산 승인 절차별 일정이 촉박하여 등심위 회의 일정이 부득이하게 조정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덧붙여, 회의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등심위에서 학교의 운영 및 재무 관련 대외비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자유롭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이 아닌 자의 참관을 제한하는 배경을 설명하다. 등심위 위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여 등심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을 각 구성단위에 전달하여 구성원 간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생 서기와 관련하여 서기의 자격을

	단과대학 대표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직접선거로 선출된 모든 학생대표에게 속기 권한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올해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대표들의 피로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과대학별 공동대표 2인 구성 시 대상 인원이 충분할 것이라고 추측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모든 학생대표는 학생회칙에 따라 4학기 이상 이수자 중에 선출된다고 설명하며 대표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는 단과대학 대표와 과대표가 동등하다고 말하다. 올해와 같이 단과대학 학생회의 구성이 지체되는 경우 과대표가 속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 측에서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며 특수상황 하에서의 조건부 허용은 검토의 여지가 있으므로 학생처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다. 다만, 선거권자의 범위를 고려할 때 단과대학 대표와 과대표가 갖는 대표성의 무게가 동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3차 회의일정이 일방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차후에는 학생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들의 수업일정을 고려하여 등심위 회의 시간을 정규수업시간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의과대학 공동대표가 부득이한 회의 일정은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의 결산(안) 확정은 4월 중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상정, 이후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절차에 따름을 설명하며 촉박한 법적 기한과 13명 위원 일정 조정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덧붙여, 추후 회의일정 조정 시 위원들의 일정을 더욱 배려하겠다고 답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회의 참관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우려하는 바에 공감을 표시하고, 참관인의 자격, 참관 인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참관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것을 제안하다.

<table>
<tr><td></td><td>-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회의록을 통해서는 회의 상세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학생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는 의결 기능이 있는 기구로서 위원회 내에서 민감한 대외비 사항을 공유하므로 본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회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등심위 회의 운영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므로 향후 법령 개정 시 회의 운영 방식도 그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다. 아울러, 등심위 회의를 통해 각 구성단위 간 상호이해와 존중의 폭이 확대된 것은 위원회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하며 향후 각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다.

■ 폐회

- 위원장이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td></tr>
<tr><td>확 인</td><td>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2년 4월 25일
<table>
<tr><th>직 위</th><th>성 명</th><th>서 명</th><th>직 위</th><th>성 명</th><th>서 명</th></tr>
<tr><td>위원장</td><td>신하윤</td><td>신하윤</td><td>위 원</td><td>백승현</td><td>백승현</td></tr>
<tr><td>위 원</td><td>강은솔</td><td>강은솔</td><td>위 원</td><td>이상은</td><td>이상은</td></tr>
<tr><td>위 원</td><td>남경희</td><td>남경희</td><td>위 원</td><td>이소연</td><td>이소연</td></tr>
<tr><td>위 원</td><td>류태경</td><td>류태경</td><td>위 원</td><td>정제영</td><td>정제영</td></tr>
<tr><td>위 원</td><td>박귀천</td><td>박귀천</td><td>위 원</td><td>한지수</td><td>한지수</td></tr>
<tr><td>위 원</td><td>박인휘</td><td>박인휘</td><td>위 원</td><td>황진선</td><td>불참</td></tr>
<tr><td>위 원</td><td>배소현</td><td>배소현</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작 성 자</td><td>예산팀 하 지 연 하지연</td></tr>
</table>